

## NEWSLETTER

April 2020

베트남 그룹  
Vietnam Practice Group

## CONTACT



외국변호사 한윤준

T: +84.28.3827.3886  
E: [younjoon.han@leeko.com](mailto:younjoon.han@leeko.com)

외국변호사 홍성미

T: +84.9.4183.6655  
E: [sungmee.hong@leeko.com](mailto:sungmee.hong@leeko.com)

변호사 김희웅

T: 02.772.4428  
E: [heewoong.kim@leeko.com](mailto:heewoong.kim@leeko.com)

변호사 백웅렬

T: 02.772.4481  
E: [woongryol.baek@leeko.com](mailto:woongryol.baek@leeko.com)

## COVID 19 Newsletter II

## COVID-19 사태에 대한 불가항력 면책 범위 적용 가능성

COVID-19의 여파가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Supply Chain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연합 등의 위기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신규주문의 감소로 인한 생산활동의 축소 및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부품 및 자재의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거나 건설 공사의 지연 및 중단이 예상되는 등 여러 산업분야의 각종 지장이 초래되면서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는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1. 국제계약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의미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통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면제되거나 의무이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을 근거로 계약상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 및 법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COVID-19사태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계약서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준거법 및 해당 국가의 법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최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국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 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는 하나, 중국기업을 상대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이 법률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고, 영국 법원 역시 불가항력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법원들도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불가항력 조항을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이나 베트남 외의 국가에서 COVID-19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 뉴스레터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 2. 베트남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및 이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 당사자가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하 준거법을 베트남 법으로 하는 계약 및 거래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민법 및 상법상 불가항력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i) 객관적인 방식으로 발생하고 (occurs in objective manner);
- (ii) 예측할 수 없으며 (unforeseeable);
- (iii)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여도 피할 수 없는 상황 (unrepairable by all possible necessary and admissible measures).

계약 위반이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에 따른 각종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 상법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계약 위반 당사자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 3. 31. 자 총리실 지시문 (Directive 16) 및 2020. 4. 3. 자 총리실 통보문 (Notice 2601)을 비롯한 각종 정부지침은 필수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 중단 및 영업이 유지되는 시설에 대한 엄격한 안전 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극대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사태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시장의 수요 급감은 베트남 내에서의 생산 및 공급의 축소, 지연 또는 중단을 초래하고, 각종 채권 채무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에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이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해당 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 불가항력 인정 여부는 기타 관련 조항 및 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 당사자는 앞서 설명해 드린 민법 및 상법상의 불가항력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가항력을 직접 주장 및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자는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여도 피할 수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의무불이행과 COVID-19와의 단순한 관련성에서 나아가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계약 위반의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3. 사정변경(Material Adverse Change)의 의미 및 코로나 19의 사정변경 해당 여부

불가항력에 기한 책임 면제 외에도, 베트남 민법 제420조는 ‘사정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현저한 사정변경의 영향을 받는 계약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재협상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의 수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각 당사자는 법원에 (i) 특정 시점에 계약의 종료 혹은 (ii) 상황 변화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경우, 계약상 당사자는 현저한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불리한 계약의 종료 또는 수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 내용 수정을 통한 계약의 효력 유지”에 비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수정을 인용하게 되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수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저한 사정변경의 상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바, 실제 하기 조건을 입증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 계약 체결 이후 객관적 사유로 발생한 사정변경일 것.
- (ii)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
- (iii) 그러한 사정변경을 예측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iv)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계약이 유지되면 일방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할 것.
- (v)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계약의 성질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이익을 줄이거나 막을 수 없을 것.

#### 4. 결론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상 의무의 면책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각 상황에 따른 면책 법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정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될 것이므로,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각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지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면책을 주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법률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